

■ 법률 칼럼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적정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 이 노동 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인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당뇨와 족부 건강 1. 당뇨의 자각 및 관리

당뇨와 족부 건강에 대해 간단하게 칼럼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겠으나, 앞으로 3회에 걸쳐 1. 당뇨의 자각 및 관리, 2. 당뇨에 의한 피부와 발톱, 그리고 3. 당뇨에 의한 신경병증(무감각) 감염, 심혈관 등의 합병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당뇨에 대해 깊게 알기 시작한 때는 학부에서 임상연구를 마치고 의대를 입학하기 전에 한 제약회사의 책임연구원 시절이었다. 당시 제 1형 당뇨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소아 당뇨라고도 불리던 제 1형 당뇨는 체장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이 주로 체장의 문제로 분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유전적인 비율이 높다. 성인에게 발생하는 당뇨는 대개 제 2형 당뇨인데 유전적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비만 또는 잘못된 생활습관 및 음식 그리고 나이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요즘은 공복혈당과 HgA1c 수치 등으로 당뇨의 정도를 쉽게 알 수가 있으나, 건강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나 의료서비스로부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환자들은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겉으로 드러난 합병증 때문에 내원했다가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뇨 환자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자주 소변을 본다. 한의학에서는 소갈증이라고 부르는데 '소'란 소실되다 없애다(消)는 뜻으로 열기가 몸 안의 음식을 잘 태우고 오줌으로 잘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갈(渴)'이란 '자주 갈증이 난다'는 뜻으로, 예전부터 당뇨환자가 적지 않았고 그 치료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가족력이 있다면 주치의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자주 진단을 받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발병을 억

제하거나 최대한 늦추도록 한다. 당뇨는 한번 발병하면 정상으로 완치되기 어려운 병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치의와 상담 시 반드시 HgA1c수치와 그 검사 날짜를 기억하고 주치의 외에 합병증으로 인해 다른 의료진을 만날 때 정확한 자신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HgA1c 수치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추이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족부의 당뇨환자가 내원하면 반드시 아침 공복 혈당과 HgA1c의 수치를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와 날짜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또한 빠짐없이 신경, 심혈관, 피부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진찰하고 그 변화를 확인한다. 정부보험과 대개의 보험회사에서는 당뇨 의심 환자 또는 당뇨환자가 적어도 9주에 한 번씩 족부의를 만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제공해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와 함께 환자 자신이 꾸준히 노력하여 당뇨의 진행 상태를 관찰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며 식이요법과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것에 있다. 안과 질환, 심혈관 질환, 신장 및 기타 기관뿐만 아니라 발에 나타나는 당뇨의 합병증에 대해 세계적으로 그 치료 방법과 비용 및 효율성에 대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다음 2회에 걸쳐서 다양한 당뇨발의 증상과 그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장원호 발전문 병원
Ryan Chang, DPM
(949) 484-4405
62 Corporate Park #235
Irvine, CA 92606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교통사고, 각종상해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교통사고/각종상해** Slip & Fall/Dog Bite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